

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의 견 서

2024. 9.

미 래 한 강 본 부

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.

미래한강본부 소관 사안으로 주택공간위원회 최기찬

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40호

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의 시설 등 이용

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,

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

조례」 제15조 한강공원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에 있어

인터넷·전화·현장 예약방식 등 이용방법의 다양화를

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, 제22조 한강시민위원회

자문사항에 약자의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추가

신설하는 것으로, 원안 동의합니다.

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